
장애인 등록 시 장애유형별 필요 서류 안내

- 지적장애 -

2020. 01

본 자료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각종 서식을 재구성한 자료입니다. 장애인 등록을 위해 참고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.

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

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·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

장애진단 시 필요한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선천적 지적장애	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
	검사결과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임상심리평가보고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※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(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, 덴버발달검사,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,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) 1개 이상 제출요함. ※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인한 전체 지능지수 판별이 어려운 경우, 시각-운동통합 발달검사(VMI), 벤더게슈탈트검사(BGT) 등 추가
	진료기록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유아의 경우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◇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진료기록지 없을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
후천적 지적장애 (노인성 치매 제외)	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
	검사결과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임상심리평가보고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◇ 뇌손상,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, CT 등 사진 자료
	진료기록지	6개월간의 진료기록(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, 퇴원요약지 위주)
지적 장애 진단시 Ti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지적장애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음 ◇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하며,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. ※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 진단 대상이 아님 	
<p><장애심사서류 완화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: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정도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읍·면·동에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장애정도를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. ○ 검사결과지 :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정도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활용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장애정도를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. ○ 진료기록지 :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		

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

진단 대상자	성명	성별	
	주민등록번호		
	주소 (전화번호:)		
장애 상태	장애유형		
	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		
	장애원인		
	장애 발생 시기		
진료기관 및 의사	의료기관	의사	진료기간 . . . ~
	의료기관	의사	진료기간 . . . ~
진단의사의 소견	※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·검사결과·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		
재판정	필요사유	재판정할 시기	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 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진단의사명
(의사 면허번호)
(전문의 자격번호)

(서명 또는 인)
(전문의 과목)

진단기관명

직인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1.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.
2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사람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.
3. 장애유형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.
4.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-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,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.
5.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